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. 9. 27 선고 2018가단24526 판결 [구상금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[담당변호사 윤현진]

피 고 1. A

2. B

3. C

피고 2,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[담당변호사 권종원]

4. D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우

변론 종결 2019. 9. 9.

판결 선고 2019. 9. 27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38,393,200원과 그 중 38,189,580원에 대하여 2018. 12. 10.부터 2019. 3. 6.까지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B, C,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,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과 같다. 피고 B,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,393,200원 중 각12,729,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12. 10.부터 2019. 3. 31.까지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, 각 지급하라.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2018. 10. 2. 체결된 매매계약은 38,283,5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 D는 원고에게 38,283,5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6. 9. 30. 피고 A과 보증원금 4,500만원, 보증기한 2017. 9. 29.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, 피고 A은 그 무렵 E 주식회사(이하 'E'라고만 한다)에게 위 보증서를 제출하고 위 보증서를 담보로 E로부터 타이어제품을 공급받았다.

나. 원고와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을 함에 있어,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경우에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대지금급, 미수손해금 등 각종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.

다. 피고 A이 E에 타이어 제품 대금 등을 갚지 못하자, 원고는 2018. 12. 10. E에 38,189,580원을 지급하였다.

라. 원고가 지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. 2. 1.부터 2019. 3. 31.까지는 연 10%, 그다음날부터는

연 8%이고,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할 대지급금은 203,620원이다.

[인정근거] 갑 1, 2-1, 2-2, 3~7, 1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.

2.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구상금 등 합계 38,393,200원(= 구상금 38,189,580원 + 대지급금 203,620원)과 그 중 구상금 38,189,58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. 12. 10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. 3. 6.까지는 원고가 지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B,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는 피고 B, C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등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, 피고 B, C에 대하여 각 구상금 등 채무 중 각 1/2에 해당되는 12,719,8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나. 그러므로 피고 B, C이 원고에게 피고 A의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살피건대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, 오히려 갑 7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 A은 일자 불상경 E와 사이에 피고 A이 E 매포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리점 운영으로 인한 E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피고 B, C이 E에게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. 따라서 원고의 피고 B,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.

다. 다만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을, 원고가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E를 대위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선행하더라도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.

갑 7의 기재에 의하면, 위 피고들은 작성일자가 공란인 E와 피고 A 사이의 대리점계약서에 위 피고들이 E와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위 연대보증인란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E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위 연대보증채무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

항변한다. 갑 10,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 B가 위 연대보증 당시 E측에 교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일자가 1999. 4. 19.경이고, 피고 C이 E 측에 교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일자가 1999. 4. 20.경인 사실(원고는 위 대리점계약이 2006년경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,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)이 인정되므로, 위대리점계약 체결일 및 위 피고들이 위 계약에 연대보증한 날까는 1999. 4. 20.경으로보아야 하고, 갑 7의 기재에 의하면, 위 대리점 계약은 '대리점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(제17조 본문)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위 연대보증계약 역시 5년이 도과하는 2004년경 기간만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. 설령 기간만으로 소멸되지않았다고 하더라도, 위 연대보증채무는 상법상 채무로서 5년이 도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었다. 따라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.

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연대보증채무는 자동적으로 갱신된다고 재항변한다. 살피건대, 갑 7의 기재에 의하면, 위 대리점 계약은 대리점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(제17조 본문)하되, 기일 종료시 쌍방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본 계약 만료의 익일로부터 동일조건으로 계속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(제17조 단서), 제17조에 따라주계약이 갱신되어 존속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서명날인시 연대보증책임도계속하여 존속함을 자필한다(제18조 제3항)'고 각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나, 한편 위 대리점계약의 주요 조항은 E가 다수의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그 중 위 자동갱신조항은 구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(2001. 3. 28. 법률 제6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조 제5호(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)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. 따라서 위 재항변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 피고 A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 2018. 10. 2. 피고 D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 D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39,283,5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 D에

대하여 가액배상으로 위39,283,580원의 지급을 구한다.

살피건대, 갑 8-1, 8-2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 A은 2018. 10. 2. 피고 D에게 피고 A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사실이 인정된다.

나아가 피고 A이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보면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, 오히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후인 2018. 12. 10.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.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.

(설령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되어 위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

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,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피고 D가 ①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7,500만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 중 3,550만 원을 피고 A의 처인 피고

C에게 송금한 점, ② 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채무

3,950만 원을 실제로 인수한 후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, ③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매수 이후

위부동산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 D는 선의의 제3자에

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).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,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정찬우

[별지]

부동산의 표시

1. 충청북도 단양군 대 166㎡

2. 충청북도 단양군

위 지상

조립식판넬구조 아스팔트형글지붕

1층 단독주택 83.98㎡